

대학원 학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홍익대학교 대학원(이하 ‘본 대학원’ 이라 한다)은 고등교육법 제28조 및 제29조에 의거하여 정심한 학술의 이론과 응용방법을 지도 연구하고 연구능력·자기학습능력·지도자적 소양을 갖춘 각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며, 학문의 생산적 기지가 되어서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정) ①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대학원에 석사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과정(이하 ‘석사학위과정’ 이라 한다)과 박사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과정(이하 ‘박사학위과정’ 이라 한다)을 둔다.

②박사학위과정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각 학과에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 (이하 ‘석·박사학위통합과정’ 이라 한다)을 둔다.

③본 대학원에 제1항에 규정된 정규 학위과정과 동일한 학과간 협동과정과 학·연·산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④필요에 따라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⑤본 대학원에 외국 대학원과의 학술교류 협약에 의하여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를 수여하는 과정을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6.9.1.>

제3조(학과(부)와 정원) 본 대학원에 설치하는 학과(부), 학과(부)별 전공, 학생 입학정원은 “별표1” 과 같다. <개정 2018.3.1., 2018.9.1., 2019.3.1., 2021.3.1., 2021.3.1.>

제2장 입학 및 입학자격

제4조(입학시기) 본 대학원의 입학시기는 매 학기 초 30일 이내로 한다.

제5조(입학자격) ①본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학위통합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전형에 합격하여야 한다.

1. 국내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2.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②본 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전형에 합격하여야 한다.

1. 국내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2.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③본교에 재직하는 교원은 원칙적으로 본 대학원에 입학할 수 없다. 다만, 학문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학기간 동안 휴직하는 조건으로 입학할 수 있다.

제6조(입학전형) ①본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학위통합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형을 실시한다.

1. 전공과목 필기시험
 2. 실기시험(미술·디자인계열에 한함)
 3. 구술시험
- ②본 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형을 실시한다.
1. 전공과목 필기시험
 2. 구술시험
- ③전형방법 등 세부사항은 내규에서 정한다.

제7조(입학지원 절차) 본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입학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졸업증명서나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증명하는 서류
2. 출신대학의 학업 성적증명서, 대학원 학업성적증명서(박사과정 지원자에 한함)
3. 기타 모집요강에서 정하는 서류

제8조(지원전공분야) 석사학위과정에 있어서는 학사과정 전공학과가 지원학과(부)의 전공과 다른 자에 대하여서도 입학자격을 인정한다.

제9조(외국인 학생의 입학) 제5조에서 규정한 입학자격을 갖춘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별전형을 거쳐 정원 외로 입학할 수 있다.

1.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2.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제10조(위탁생의 입학)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에 대한 입학, 편입학, 재입학의 경우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11조(재입학 및 편입학) ①제적 또는 퇴학한 자가 재입학을 원할 때에는 학위논문 제출기한 내에 졸업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정원에 여석이 있을 때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28조제3호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②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이 재학생수를 초과하는 범위 안에서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3장 수업연한, 재학연한, 수업일수, 교과과정, 선수과목, 학점, 수료

제12조(수업연한) ①수업연한은 석사학위과정에 있어서는 2년(4학기), 박사학위과정에 있어서는 2년(4학기), 석·박사학위 통합과정에 있어서는 4년(8학기)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석사연계과정은 1개 학기 이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19.3.1.>

제13조(재학연한) 재학연한은 석사학위과정에 있어서는 3년(6학기), 박사학위과정에 있어서는 5년(10학기), 석·박사학위통합과정에 있어서는 7년(14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휴학 기간은 재학연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4조(수업일수) 매 학기 수업일수는 15주 이상으로 한다.

14조의2(수업시간) 집중수업제가 필요한 과목에 대하여는 매 학기 1학점 당 15시간 이상의 수업시간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총장의 승인을 받아 수업일수를 단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8.9.1.>

제15조(이수과목) ①본 대학원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과목은 전공 과목과 이에 관련되는 부전공 과목의 2종으로 한다.

②본 대학교 학사과정 제3학년 이상 재학생 중 직전학기까지의 전학년 평균성적이 B⁺ 이상인 자에게 석사학위과정의 교과목을 총 9학점 범위 내에서 이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3. 1.>

③석사학위 과정 중 본 대학교 학사학위과정의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6학점까지 해당 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9.3.1.>

제15조의2(학위과정 연계) 석사학위 교육과정과 석사학위 교육과정을 상호연계한 학·석사 연계과정을 둔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9.3.1.>

제16조(교과과정) ①본 대학원의 과정별 각 학과(부)의 교과과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대학원 석·박사학위과정은 석·박사학위과정 동일학과(부)의 교과과정을 수강 신청할 수 있고, 본교내 특수대학원, 전문대학원의 교과과정을 학칙 제17조, 제21조와 학사내규에 정한 바에 따라 수강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수강지도) ①이수과목의 선택은 학과(부)장과 논문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②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본 대학교 학사과정 제3학년 이상 학생의 대학원 교과목 수강은 대학원 교과목 담당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3.1.>

③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과목 수강은 학과장 또는 논문지도 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9.3.1.>

제18조(선수과목) 대학원 과정에서 사전에 선수 교과목을 이수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총장이 지정하는 과목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취득한 학점은 학위취득 소요 학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9조(재입학자에 대한 학점처리) 본 대학원생으로서 제적된 자가 동일과정에 재입학하였을 때는 제적 전에 취득한 학점을 통산하여 줄 수 있다.

제20조(학기당 이수학점) ①학생은 매 학기 석사 또는 박사학위과정에서 9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

②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본 대학교 학사과정 제3학년 이상 학생은 학기당 9학점을 초과하여 석사학위과정 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 <개정 2019.3.1.>

제21조(대학원간의 학점인정) ①본 대학원은 본교 내의 타 대학원과의 공동강의 또는 선택 과목을 통해 석사학위과정에서 9학점까지 학점을 상호 인정할 수 있다.

②본 대학원 재학생이 학점 상호 인정 체결 협정에 의해 국내외의 타 대학교 대학원에서 학점을 이수한 경우 석사학위과정은 9학점까지, 박사학위과정은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수료) ①각 과정의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②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석·박사학위통합과정에서 소정의 수업연한을 마치고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여 그 평점 평균이 3.0(B⁰) 이상인 자에게는 수료증명서를 발급하고 수료 후 연구등록금을 납부한 자에게는 당해학기 연구생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4장 성적

제23조(학업성적) 학업성적의 등급, 점수 및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급	점수	평점	등급	점수	평점	등급	점수	평점	등급	점수	평점
A ⁺	95~100	4.5	B ⁺	85~89	3.5	C ⁺	75~79	2.5	F	69이하	0
A ⁰	90~94	4.0	B ⁰	80~84	3.0	C ⁰	70~74	2.0			

제24조(유효성적) 학점은 C⁰ 이상을 취득학점으로 계산한다.

제5장 등록, 휴학 및 복학, 자퇴, 제적

제25조(등록과 등록금) ①등록은 매 학기 학교에서 정한 기간 내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입하고 필요한 절차를 마쳐야 한다.

②이미 납부한 수업료 및 입학금의 반환은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다만, 수업료 또는 입학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제26조(휴학 및 복학) ①질병, 임신, 출산, 육아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개월 이상 수강할 수 없을 때는 휴학원을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3.1.>

②휴학기간은 석사학위과정은 4학기,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은 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③군복무,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하여 휴학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3.1.>

④휴학자가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매 학기 학교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복학원서를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신입생은 제1차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다. 다만, 군복무, 질병, 임신, 출산, 육아 등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관계 증빙서류를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 특별히 휴학을 허가 받을 수 있다.

제27조(자퇴) 자진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서를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8조(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1.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등록금을 소정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
3. 재학연한 내에 과정의 소정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자.
4.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된 자.

제6장 석사학위

제29조(학위수여 요건) ①석사학위는 석사학위과정 24학점 이상(논문 및 작품 6학점 별도)을 취득하고 석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그 심사와 구술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수여한다. 다만, 이에 추가하여 작품심사에도 합격하여야 되는 학과(부)는 내규에서 정한다.

②석·박사학위통합과정 중에 퇴학한 자로서 제1항에서 규정한 석사학위 수여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석사학위논문을 개별연구과제 또는 학점으로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8.3.1.>

④개별연구과제로 석사학위 논문을 대신하는 경우, 석사학위과정 24학점 이상을 취득한 후 개별연구과제에 대한 소정의 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

⑤학점으로 석사학위 논문을 대신하는 경우, 석사학위과정 30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신설 2018.3.1.>

제30조(학위논문의 제출자격) 석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4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로서 논문지도교수로부터 1개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경우.
2. 석사학위과정의 소정학점을 모두 취득하고 그 평점 평균이 3.0(B⁰)이상인 경우.
3.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경우.

4. 석사학위과정 종합시험에 합격한 경우.

제31조(학위논문의 제출절차) ①석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을 제출하려는 학기 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석사학위청구논문(작품) 제출원
2. 석사학위청구논문(작품) 추천서 및 발표승인서

②석사학위청구논문의 심사를 받기 위하여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한 자는 소정기간 내에 심사료와 함께 심사용 석사학위청구논문 3부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고 논문 심사에 응하여야 한다. 이에 추가하여 작품심사도 받아야 하는 학과(부)의 학생은 작품 2점을 논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①외국어시험 과목은 영어로 한다. 다만, 총장의 승인을 받아 달리 정할 수 있다. 종합시험은 2개의 시험과목에 대하여 시험을 시행한다. <개정 2018.9.1., 2019.8.1.>

②시험은 각 과목마다 대학원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총장이 위촉하는 1인 이상의 시험위원이 출제 채점하며, 시험결과는 100점 만점에 평균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개정 2019.8.1.>

③<삭제 2019.8.1.>

④외국인 학생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0조제3호에서 규정한 외국어시험 요건을 총장의 승인을 받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외국어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한국어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8.9.1.>

제33조(학위논문의 심사) ①석사학위청구논문(작품심사를 실시하는 학과(부)는 작품 포함) 심사 및 구술시험은 해당 학과(부)장과 지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이를 행한다.

②총장은 제1항의 위원 중 1인을 심사위원장으로 지정하여 심사의 진행을 주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은 심사에 있어서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

③논문(작품)심사와 구술시험은 총 100점 만점에 평균 80점 이상을 받고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격으로 결정한다.

④심사위원(논문 지도교수)은 학위논문심사에서 본교 연구윤리 관련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4조(학위논문의 작성) ①석사학위청구논문은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논문을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초록의 경우에는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을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③ 학위논문 작성자는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학위논문의 제출시한) ①석사학위청구논문은 입학년도부터 7년 이내에 제출하여 그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군의무복무기간은 논문제출시한 7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학위논문 제출시한이 경과된 자에게는 1회에 한하여 별도의 기간에 학위논문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종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고, 논문제출학기전까지 1개 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7장 박사학위

제36조(학위수여 요건) 박사학위는 박사학위과정 36학점(석·박사학위통합과정의 경우에는 60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박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그 심사와 구술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수여한다. 다만, 이에 추가하여 작품심사에도 합격하여야 되는 학과 및 전공은 내규에서 정한다.

제37조(학위논문의 제출자격) 박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박사학위과정은 4학기 이상,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은 8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로 논문지도교수로부터 2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경우.
2. 박사학위과정 또는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의 소정학점을 모두 취득하고 그 평점평균이 3.0(B⁰) 이상인 경우.
3.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경우.
4. 박사학위과정 종합시험에 합격한 경우.

제38조(학위논문의 제출절차) ①박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을 제출하려는 학기 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박사학위청구논문 추천서 및 발표승인서

2. 이력서
3. 연구실적서
4. 재학기간 중 전공과 관련된 논문을 학회지 또는 학술지에 1회 이상 게재하고 그 논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대신하여 작품심사를 하는 학과 및 전공의 학생은 재학기간 중 전공과 관련된 작품전을 1회 이상 발표하고 그 작품전 발표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5. 논문제출대상자는 학과장과 지도교수 책임 하에 논문내용에 관한 공개발표회를 개최하고, 학과장은 그 평가결과보고서를 논문심사 이전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박사학위청구논문의 심사를 받기 위하여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한 자는 소정기간 내에 심사료와 함께 심사용 박사학위청구논문 5부를 제출하고 논문 심사에 응하여야 한다.

제39조(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①외국어시험과목은 영어로 한다. 다만, 총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언어를 추가할 수 있다. 종합시험은 2개의 시험과목에 대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9.8.1.>

②시험은 각 과목마다 대학원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총장이 위촉하는 1인 이상의 시험위원이 출제 채점하며, 시험결과는 100점 만점에 평균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개정 2019.8.1.>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외국어시험은 학과단위로, 학과 교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면제할 수 있다.

④외국인 학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어시험 과목을 영어 또는 한국어로 한다. 다만, 총장의 승인을 받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9.1.>

제40조(대학원위원회의 심의) ①박사학위청구논문이 제출되면 대학원장은 대학원위원회에 회부하여 논문의 심사여부를 결의한다.

②제1항의 심의결과 논문을 심사하지 않기로 결의하였을 때에는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며, 총장은 심사불가 이유를 학생에게 설명하고 제출서류와 심사료를 반환한다.

제41조(심사위원 선정) ①대학원위원회에서 논문을 심사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에 총장은 본 대학교 교수 또는 사계의 권위자 중에서 5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이를 심사하게 한다.

②총장은 제1항의 위원 중 1인을 심사위원장으로 지정하여 심사의 진행을 주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은 심사에 있어서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

- 제42조(학위논문의 심사) ①심사위원은 심사 개시 후 소정기일 내에 박사학위청구논문의 심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심사를 차기 학기로 이월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결의로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구술시험은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이 행하며, 위원의 과반수 동의로 구술시험 과정을 공개할 수 있다.
- ③논문심사와 구술시험은 총 100점 만점에 평균 80점 이상을 받아야 하고, 심사위원 5분의 4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격으로 결정한다.
- ④심사 상 필요할 때에 대학원위원회는 학위논문제출자에 대하여 부분, 역본 또는 모형, 표본 등의 기타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⑤심사위원(논문 지도교수)은 학위논문심사에서 본교 연구윤리 관련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43조(학위논문의 작성) ①박사학위청구논문은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논문을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초록의 경우에는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을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 ③박사학위청구논문은 1편으로 한다. 다만, 참고논문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 ④ 학위논문 작성자는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4조(학위논문의 제출시한) ①박사학위청구논문은 입학년도부터 11년 이내에, 석·박사 학위통합과정은 12년 이내에 제출하여 그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군의무복무기간은 논문제출시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②학위논문 제출시한이 경과된 자에게는 1회에 한하여 별도의 기간에 학위논문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종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고, 논문제출학기전까지 2개 학기이상 논문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8장 학위의 수여 및 취소, 권한위임

- 제45조(학위의 종류 및 학위종별) 학위는 석사 및 박사의 2종이 있으며, 학위종별은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17.3.1., 2018.3.1., 2019.3.1., 2021.3.1., 2021.3.1.>

제46조(학위논문의 심사결과 보고) ①석사학위청구논문의 경우, 심사위원장은 학위청구논문 심사, 구술시험 및 작품심사 결과를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②박사학위청구논문의 경우, 심사위원장은 학위청구논문심사, 구술시험 및 작품심사 결과를 대학원위원회에 보고하고, 대학원위원회에서는 박사학위 수여 여부에 대해 심의한 후 대학원장은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47조(석사학위수여) 석사학위수여는 별지 서식(1) 및 서식(5)에 의한 학위기로서 행한다.
<개정 2016.2.1.>

제48조(박사학위수여) 박사학위수여는 별지 서식(2) 및 서식(5)에 의한 학위기로서 행한다.
<개정 2016.2.1.>

제49조(학위수여의 취소) 학위를 수여받은 자가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또는 학위를 받은 후 그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총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50조(권한위임) 이 학칙에 규정된 총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장 명예박사학위

제51조(명예박사학위수여) ①명예박사학위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우리나라의 학술과 문화에 특수한 공헌을 하였거나 또는 인류문화 향상에 특수한 공적을 나타낸 자에게 총장이 수여한다.

②명예박사학위수여는 별지 서식(3)에 의한 학위기로서 행한다.

제52조(명예박사학위종별) 명예박사학위는 제45조의 박사학위종별에 의하여 수여하되 대학원위원회가 학위를 받을 자의 공헌 또는 공적에 의해 구분 결정한다.

제53조(명예박사학위 취소)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10장 공개강좌 및 연구과정

제54조(공개강좌) ①본 대학원에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②공개강좌는 직무, 교양 및 연구를 위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지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공개강좌의 과목 또는 제목, 기간, 수강정원, 장소 및 기타에 관한 사항은 각 강좌별로 총장이 결정하여 발표한다.

제55조(연구과정) ①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특수과목 또는 과제에 관하여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연구과정으로 입학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연구과정 지원자에 대하여는 소정의 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③연구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별지 서식(4)에 의한 연구실적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11장 장학금, 학생의 징계 및 포상

제56조(장학금 및 연구보조금) 본 대학원 학생으로서 품행이 방정하고 학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대학원 장학금 지급규정에 따라 장학금 및 연구보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8.3.1.>

제57조(징계) 학생이 학칙을 위반하거나 학생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학생상벌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징계에 대해 심의하고 총장이 결정한다.<개정 2015.10.1.>

1. 근 신
2. 유기정학
3. 무기정학
4. 제 적

제57조의2(학생상벌위원회) 학생의 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생상벌위원회를 두고,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5.10.1.>

제58조(포상)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성행이 타의 모범이 되고 학교발전에 공로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장 직제와 대학원위원회

제59조(직제) ①본 대학원에는 원장 외에 각 과정의 학과(부)마다 3인 이상의 교원을 둔다.

②제1항의 교원 중 적어도 2인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한다.

제60조(학과(부)장) ①본 대학원에는 제59조의 교원 중에서 각 학과(부)마다 1인의 학과(부)장을 둔다.

②학과(부)장은 학과(부)의 수업과 연구지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61조(위원회의 설치) ①본 대학원에는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②대학원위원회는 본 대학교 교수 중에서 총장이 지명하는 위원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부교수 중에서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62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61조에서 위원으로 지명된 자가 부총장, 대학(원)장, 처장인 경우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3조(위원회의 기능) ①본 대학원위원회는 별도로 규정된 직무를 제외하고는 본 대학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의 입학 및 진학과 과정의 수료인정에 관한 사항
2. 학과(부)와 전공의 설치와 폐지 및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3. 수업계획에 관한 사항
4. 공개강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학위 및 대학원 또는 대학원위원회에 관한 제규정, 예규 등에 관한 사항
6. 장학금 지급 또는 보조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5.10.1.>
8. 기타 본 대학원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제64조(위원회의 소집) ①대학원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대학원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결의한다.

제13장 학칙개정

제65조(학칙개정) 이 학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학원장이 개정의견을 수합하여 총장이 발의하고 개정안을 1주일 이상 공고한 후, 대학원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에서 심의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친다. <개정 2017.3.1.>

제14장 보칙

제66조(시행세칙) 이 학칙에 규정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7조(준용규정) 이 학칙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본 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학칙의 시행으로 이전의 홍익대학교 대학원 학칙 및 학위수여규정은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이전의 홍익대학교 대학원 학칙 및 학위수여규정에 의해 진행된 학사업무는 이 학칙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④(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공학계열의 “전자공학과”와 “전파통신공학과” 재적생 중 2004년 이전 입학자는 졸업 시까지 당초 학적을 보유한다. “금속·재료공학과” 재적생은 “신소재공학과” 재적생으로, 학과간 협동과정의 “분자전자공학” 재적생은 “정보디스플레이공학” 재적생으로 본다.

⑤(경과조치) 제23조(학업성적)의 등급, 점수 및 평점은 2005년 3월 1일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건축학과, 건축공학과 및 소프트웨어·게임학과 학위종별 변경은 2005년 3월 1일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12조 “박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200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고 변경학칙 이전 박사학위과정 재적생은 변경학칙 이전의 수업연한을 적용 한다.

③(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학·연·산 협동 교육학과 박사학위과정 재적생에 대하여는 졸업 시 까지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④(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의상학과” 재적생은 “의상디자인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35조 및 제44조 제2항은 200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2007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석사학위과정의 공간디자인학과, 사진학과, 산업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과에 각각 재적 중인 자는 졸업 때까지 당초 학적을 보유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석사학위과정의 “정밀기계공학과”에 재적 중인 자는 졸업 때까지 당초 학적을 보유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2009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석·박사학위과정의 “무역학과”에 재적 중인 자는 졸업 때까지 당초 학적을 보유한다.

③(경과조치) 2009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석·박사학위과정의 “정보산업공학과” 재적생은

“산업공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④(경과조치) 2009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석사학위과정의 “경영정보학과”에 재적 중인 자는 졸업 때까지 당초 학적을 보유한다.

⑤(경과조치) 2009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석사학위과정의 “광고멀티미디어디자인과”에 재적 중인 자는 졸업 때까지 당초 학적을 보유한다.

⑥(경과조치) 2009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박사학위과정의 “광고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에 재적 중인 자는 졸업 때까지 당초 학적을 보유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2011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석사학위과정의 “소프트웨어·게임학과”에 재적 중인 자는 졸업 때까지 당초 학적을 보유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석·박사학위과정의 “광고커뮤니케이션학과” 재적생은 “광

고흥보커뮤니케이션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부칙

①(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4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전과의 특례) 2014학년도 현재의 박사과정 법학과 재적생에 한하여 박사과정 지식재산학과로 전과를 허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은 시행당시 “미술비평전공” 재적생은 “예술학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부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전과의 특례) 이 학칙 개정전에 문화예술경영학과(주간 및 야간)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경영학과 박사과정에 진학한 재적생에 한하여는 문화예술경영학과 박사과정으로 전과를 허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시행 당시 석·박사학위과정의 전기·정보·제어공학과, 전자정보통신공학과에 각각 재적 중인 자는 전자전기공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학위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시행 당시 일반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은 개정 학칙에 따른 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개정 학칙 이전의 학위를 희망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입학당시 학칙을 적용한다.

부칙

- ①(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시행당시 “국어국문학과” 재적 중인 학생은 “국어국문학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개정학칙 이전의 학과를 희망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입학당시 학칙을 적용한다.

부칙

- ①(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전공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학칙 시행 이전 석사학위과정의 “제품디자인과”의 재적생은 개정 전 학칙을 적용하며, 개정학칙에 따라 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개정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학부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시행 당시 “메타디자인학부” 내 세부트랙 재적생은 “디자인학부” 해당 세부트랙 재적생으로 본다.
- ③(트랙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시행 당시 메타디자인학부의 제품디자인 트랙

과 운송기기디자인 트랙 재적생은 디자인학부 산업디자인 트랙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종합시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시행 당시 재적 또는 수료 중인 학생의 종합시험 인정 과목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사 : 개정 전 종합시험 1과목에 합격한 경우 1개의 시험과목 합격으로 인정, 2과목에 합격한 경우 2개의 시험과목 합격으로 인정
2. 박사 : 개정 전 종합시험 1개 또는 2과목에 합격한 경우 1개의 시험과목 합격으로 인정, 3과목에 합격한 경우 2개의 시험과목 합격으로 인정

부 칙

①(시행일)이 개정 학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전기공학과 재학생 및 휴학생은 전자전기융합공학과 재학생 및 휴학생으로, 전자전산공학과 재학생 및 휴학생은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재학생 및 휴학생

생으로, 영상학과 재학생 및 휴학생은 영상·인터랙션학과 재학생 및 휴학생으로 본다. 다만, 개정 전 학칙에 따라 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개정 전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도예과 및 디자인공예학과 도예전공 재학생 및 휴학생은 도예·유리과 및 디자인공예학과 도예·유리전공 재학생 및 휴학생으로, 화학시스템공학과 재학생 및 휴학생은 바이오화학공학과 재학생 및 휴학생으로 본다. 다만, 개정 전 학칙에 따라 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개정 전 학칙을 적용한다.

별표1(제3조) <개정 2013.3.1., 2014.3.1., 2015.3.1., 2016.9.1., 2017.3.1., 2018.3.1., 2018.9.1., 2019.3.1., 2021.3.1., 2021.3.1.>

1. 석사학위과정

4계열 51학과 1학부 2전공, 입학정원 592명(학·연·산 협동과정/학과간 협동과정 포함)

구분	계열		인원	학과(부)	비고
서울 캠퍼스	이학계열		543명	물리학과 수학과	2학과
	공학계열			건축학과 기계공학과 도시계획과 신소재공학과 전자전기공학과 산업공학과 컴퓨터공학과 토목공학과 화학공학과 실내건축학과	10학과
	인문사회계열			경영학과 경제학과 광고홍보학과 교육학과 국어국문학과(국어국문학전공, 한국어교육전공) 독어독문학과 미술사학과 미학과 법학과 불어불문학과 사학과 영어영문학과 문화예술경영학과 세무학과	14학과 2전공
	미술디자인계열			금속조형디자인과 도예·유리과 동양화과 디자인학부(공간디자인트랙, 산업디자인트랙, 시각디자인트랙, 사진트랙) 목조형가구학과 섬유미술과 예술학과 의상디자인학과 조소과 판화과 회화과	10학과 1학부
세종 캠퍼스	공학계열		49명	건축공학과 금속공학과 기계정보공학과 세라믹공학과 전자전기융합공학과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조선해양공학과 바이오화학공학과	8학과
	인문사회계열			글로벌경영학과 금융보험학과 광고홍보커뮤니케이션학과	3학과
	미술디자인계열			영상·애니메이션학과 디자인이노베이션&테크놀로지학과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3학과
	공학(미술디자인)계열			게임학과(공학계열, 미술디자인계열)	1학과
서울 캠퍼스	학·연·산 협동과정	한국화학연구원	-	공업화학학과 금속공학과 신소재공학과 화학학과 바이오화학공학과	19학과
		FAG한화베어링(주) 연구소		신소재공학과 기계공학과 기계정보공학과 화학공학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공업화학학과 신소재공학과 기계공학과 전자전기공학과 정밀기계공학과 산업공학과 화학공학과 바이오화학공학과	
		한국도자기그룹		공업화학학과 무기재료공학과 산업공예과 산업디자인학과 화학과 바이오화학공학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공업화학학과 신소재공학과 물리과 생명과학과 지구과학과 화학과 바이오화학공학과	

세종 캠퍼스		한국해양연구원	-	조선해양공학과 토목공학과	2학과
서울 캠퍼스	학과간협동과정	정보디스플레이공학	-	신소재공학과 물리학과 전자전기공학과 컴퓨터공학과 바이오화학공학과 기계공학과	6학과
		지식재산학(MIP)	-	기계공학과 신소재공학과 전자전기공학과 산업공학과 경영학과 법학과 디자인학부	7학과
		산업융합협동과정 (서울)	-	전학과	51학과
세종 캠퍼스		산업융합협동과정 (세종)	-	전학과	

2. 박사학위과정

4계열 38학과, 입학정원 192명(학·연·산 협동과정, 학과간 협동과정 포함)

구분	계열		인원	학과 및 전공	비고
서울 캠퍼스	이학계열		181명	수학과	1학과
	공학계열			건축학과 기계공학과 도시계획과 신소재공학과 전자전기공학과 산업공학과 컴퓨터공학과 토목공학과 화학공학과	9학과
	인문사회계열			경영학과 경제학과 광고홍보학과 교육학과 국어국문학과 독어독문학과 세무학과 미술사학과 미학과 법학과 불어불문학과 사학과 영어영문학과 지식재산학과 문화예술경영학과	15학과
	미술·디자인·공예계열			미술학과 동양화전공 예술학전공 조소전공 판화전공 회화전공	3학과
		디자인·공예학과 공간디자인학전공 금속조형디자인전공 도예·유리전공 목조형가구학전공 사진학전공 산업디자인학전공 섬유미술전공 시각디자인전공 의상학전공 색채전공 공공디자인전공			
		영상·인터랙션학과			
세종 캠퍼스	공학계열		11명	건축공학과 기계정보공학과 전자전기융합공학과 소프트웨어융합학과 바이오화학공학과 재료공학과	6학과
	인문사회계열			금융보험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광고홍보커뮤니케이션학과	3학과
	미술·디자인·공예계열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1학과
서울 캠퍼스	학·연·산 협동과정	한국화학연구원	-	공업화학과 금속공학과 신소재공학과 화학과 바이오화학공학과	14학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신소재공학과 기계공학과 전자전기공학과 산업공학과 화학공학과 바이오화학공학과	
		한국기초과학지원 연구원		공업화학과 신소재공학과 물리과 생명과학과 지구과학과 화학과 바이오화학공학과	
세종 캠퍼스	한국해양연구원		-	조선해양공학과 토목공학과	
서울 캠퍼스	학과간 협동과정	정보디스플레이공학	-	물리학과 신소재공학과 전자전기공학과 컴퓨터공학과 바이오화학공학과 기계공학과	6학과
		산업융합협동과정 (서울)	-	전학과	
세종 캠퍼스	산업융합협동과정 (세종)		-	전학과	38학과

별표2(제45조) <개정 2013.3.1., 2014.3.1., 2016.9.1., 2017.3.1., 2018.3.1., 2021.3.1., 2021.3.1.>

1. 석사학위종별

계열	학과(부)	석사학위	계열	학과(부)	석사학위	
이학계열	물리학과 수학과	이학석사 이학석사	미술·디자인 계열	금속조형디자인과 도예·유리과 동양화과 디자인학부 목조형가구학과 섬유미술과 예술학과 의상디자인학과 조소과 판화과 회화과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디자인이노베이션& 테크놀로지학과 영상·애니메이션학과	미술학석사 미술학석사 미술학석사 미술학석사 미술학석사 미술학석사 문학석사 미술학석사 미술학석사 미술학석사 미술학석사 미술학석사 미술학석사	
공학계열	건축학과	공학석사/ 건축학석사		공학(미술·디 자인)계열	게임학과	공학석사/ 미술학석사
	신소재공학과 기계공학과 도시계획과 전자전기공학과 산업공학과 컴퓨터공학과 토목공학과 화학공학과 건축공학과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건축학석사			실내건축학과 금속공학과 기계정보공학과 세라믹공학과 전자전기융합공학과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조선해양공학과 바이오화학공학과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인문사회 계열	경영학과 경제학과 광고홍보학과 교육학과 국어국문학과 독어독문학과 무역학과 미술사학과 미학과 법학과 불어불문학과 사학과 영어영문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금융보험학과 세무학과 문화예술경영학과 광고홍보커뮤니케이션학과	경영학석사 경제학석사 문학석사 교육학석사 문학석사 문학석사 경영학석사 문학석사 문학석사 문학석사 문학석사 문학석사 문학석사 문학석사 경영학석사 경영학석사 세무학석사 문화예술경영학석사 문학석사	학연·산 협동과정	공업화학과 금속공학과 신소재공학과 기계공학과 기계정보공학과 무기재료공학과 물리과 산업공예과 산업디자인학과 생명과학과 전자전기공학과 정밀기계공학과 산업공학과 조선해양공학과 지구과학과 토목공학과 화학공학과 화학과 바이오화학공학과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이학석사 미술학석사 미술학석사 이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이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이학석사 공학석사	

계열		학과(부)	석사학위
학과간협동과정	정보디스플레이공학	신소재공학과 물리학과 전자전기공학과 컴퓨터공학과 바이오화학공학과 기계공학과	공학석사 이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지식재산학	기계공학과 신소재공학과 전자전기공학과 산업공학과 경영학과 법학과 디자인학부	지식재산학석사
	산업융합협동과정 (서울)	전학과	공학석사 경영학석사 미술학석사
	산업융합협동과정 (세종)	전학과	공학석사 경영학석사 미술학석사

<서식(1)> 석사학위기 양식(제47조)

석사 제 호		
학	위	기
성 명		
년 월 일생		
학과(부)		전공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과 논문심사에 합격하여 학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년 월 일		
홍 익 대 학 교	대 학 원 장	(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학석사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홍 익 대 학 교	총 장	(인)
학위등록번호 : _____		

※ 원장, 총장의 학위명을 넣을 수 있음.

<서식(2)> 박사학위기 양식(제48조)

박사 제 호		
학	위	기
	성 명	
	년 월 일	생
	학과	전공
<p>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후 아래의 논문을 제출하여 대학원 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였으므로 학박사의 자격을 인정함.</p>		
논 문 :		
	년 월 일	
홍 익 대 학 교	대 학 원 장	(인)
<hr/>		
위의 인정에 의하여 학박사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홍 익 대 학 교	총 장	(인)
학위등록번호 : _____		

※ 원장, 총장의 학위명을 넣을 수 있음.

<서식(3)> 명예박사학위기 양식(제51조)

명박 제 호		
학	위	기
성 명		
년 월 일생		
학과 전공		
이 분은 ()으로 지대한 공헌을 하였으므로 본 대학원 대학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 학박사학위를 수여하여 그 공적을 찬양 하고자 이에 추천함.		
년 월 일		
홍 익 대 학 교 대 학 원 장 (인)		
위의 추천에 의하여 학박사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홍 익 대 학 교 총 장 (인)		
학위등록번호 : _____		

※ 원장, 총장의 학위명을 넣을 수 있음.

<서식(4)> 연구실적증서 양식(제55조)

제	호
증 서	
성 명	
년 월 일 생	
학과 전공	
위 사람은 본 대학원 소정의 연구과정을 이수하고 그 실적이 양호하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홍 익 대 학 교 대 학 원 장 (인)	

※ 원장의 학위명을 넣을 수 있음.

<서식(5)> 영문학위양식(제47조 및 제48조)

HONGIK UNIVERSITY

on the recommendation of the faculty

has conferred upon

【영문성명】

the Degree of

【영문학위명】

in recognition of the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is degree

August 21, 20xx

【대학원장 서명】

【영문 대학원장 명】

Dean, Graduate School

【총장 서명】

【영문 총장 명】

President of the University

【영문학위등록번호】